

장성군의회 공고 제2018-13호

장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「장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장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2조제2항 및 제4항 변경
 -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·과·소장급
→ 보좌기관인 담당관 및 보조기관 중 국·과·소장급
 - 군 본청의 실·과장
→ 군 본청의 담당관·과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(2018. 8. 27. 일부개정)

5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16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조례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군수
2. 군수의 보좌기관인 담당관 및 보조기관 중 국·과·소장급
3.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
5.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장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